

HACCP

조기정착방안 워크샵

▲곽형근 과장(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안전과)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시 관련시설의 미비한 점이나 HACCP 계획점검표에 의한 재평가가 미흡한 점 등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영업장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를 당부하고 싶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위생감시연간 축산물지침에 의한 작업장 시설 및 위생수준 점검시 HACCP 인증업체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여부를 가능한 것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반면 비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이다. 또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는 교육프로그램은 담당기관과 협의해 다양한 HACCP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HACCP 품목확대를 위한 부분육과 육가공공장의 적용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포장육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히 내려지지 않아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으로는 HACCP이 저변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대소비자 홍보가 필요한 만큼 농림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민간업체에서 공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함께 도계검사 보조원제의 경우 그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도계검사 공영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명호 팀장(한국식품개발연구원 규격인증연구팀)
상당수 작업장이 허가 당시부터 법적규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자체의 후속관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다. 때문에 HACCP 시행을 위해서는 차라리 새로 건설하는 것이 낫은 업체들도 많은 실정이며 5억원의 정부 지원으로도 사용처 조차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정부는 HACCP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제품별 안전성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고 이의 달성수준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학계 및 연구기관과 함께 품목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돼야 한다.

이와함께 자율적인 안전성 보증이 가능한 업체로 인정된 업체는 규제자원의 감시활동을 대폭 완화하고 유류자원을 HACCP 관리체제의 개발 및 운용시도업체에 직접적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적용돼온 법률적 규제요건의 충족을 위한 관리수단들이 HACCP 관리체제와 함께 조화돼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력한 사후관리와 HACCP 전문인력 자격관리 및 등록제도의 시행을 통해 인력 POOL을 구성하는 것도 향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작업장 경영자는 실무위주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내부교육으로 종업원들 스스로 HACCP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축산신문발췌)